

## 구월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구월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

#### ■ 개정사항

- |                                  |                                        |
|----------------------------------|----------------------------------------|
| ○ 주민자치 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 : 제9조(위원의 자격)                          |
| ○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 : 제11조(위원 신청 및 관리)                     |
| ○ 주민자치 위원 선정·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 : 제12조(위원의 선정·위촉)                      |
| ○ 주민자치 위원 추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 제13조(추천운영위원회)                        |
| ○ 고문 직위 관련 조항 개정                 | : 제17조(위원 및 임기)                        |
|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 : 제41조(사용료 등) 및<br>제45조(사용료·수강료 등의 환불) |
| ○ 주민자치회의 회계, 집행사항 등에 관한 감사 사항 개정 | : 제51조(결산감사 및 공개)                      |

####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1.

#### ■ 불 임 : 구월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세척 개정사항(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p><b>제9조(위원의 자격)</b> ① 위원은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구월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u>&lt; 신 설 &gt;</u></p> <p>2. 구월4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p> <p>3. 구월4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p> <p>2. 지방의회 의원</p> <p>3. 누구든지 다른 동 주민자치회의 중복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p> <p>4. 조례 제20조 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b>제11조(위원 신청 및 관리)</b>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 및 관리는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위·해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1. 위원 추천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p> <p>2. 위원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p> <p>3. 신청 접수부(별지 제5호 서식)</p> | <p><b>제9조(위원의 자격)</b> 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u>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u></p> <p>1. 구월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u>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구월4동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u></p> <p>3. 구월4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u>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u></p> <p>4. 구월4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및 <u>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u></p> <p>② <u>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0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b>제11조(위원 신청 및 관리)</b> ①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르며,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

## 세칙 개정사항(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p><b>제12조(위원의 선정·위촉)</b> ① 위원에의 선정·위촉은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는다.</p> <p><u>&lt;신 설&gt;</u></p> <p><b>제13조(추첨운영위원회)</b> ① 위원 모집에 따른 공개추첨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8조 8항 및 규칙 제4조 3항에 의거 주민자치회 내에 추첨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추첨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등에 의뢰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개추첨이 종료되면 추첨운영위원회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p> <p>③ 추첨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추첨방식 및 절차는 추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b>제17조(임원 및 임기)</b>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회장 1명</li> <li>2. 부회장 2명</li> <li>3. 감사 2명</li> <li>4. 간사 1명</li> <li>5. 분과위원장 3명이상</li> <li>6. 고문 0명</li> </ol>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고문(명예직으로 전임 자치회장을 고문으로 한다)을 둔다.</p> | <p><b>제12조(위원의 선정·위촉)</b> ① 위원에의 선정·위촉은 <u>조례 제7조의 2</u>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p> <p><u>&lt;삭 제&gt;</u></p> <p>③ <u>조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 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b>제17조(임원 및 임기)</b>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회장 1명</li> <li>2. 부회장 2명</li> <li>3. 감사 2명</li> <li>4. 간사 1명</li> <li>5. 분과위원장 3명이상</li> </ol> <p><u>&lt;삭 제&gt;</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 세칙 개정사항(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p><b>제41조(사용료 등)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별표1로 정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b>제45조(사용료·수강료 등의 환불)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li> <li>2. 사용예정 전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한 날을 공제한 수강료만 환불한다. 카드 결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불한다.</li> <li>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한 날을 공제한 수강료만 환불한다. 카드 결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불한다.</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b>제51조(결산감사 및 공개) ①</b>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회계책임자는 반기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반기경과 후 15일 이내 정기회의시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p><b>제41조(사용료 등)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u>별표1</u>로 정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b>제45조(사용료·수강료 등의 환불)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용시간 전까지</u>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li> <li>2. <u>사용예정 전까지</u>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u>환불신청일 또는 환불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남은 강의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u>하여 환불한다. 카드 결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불한다.</li> <li>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u>전액 환불하고, 환불신청일 또는 환불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남은 강의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u>하여 환불한다. 카드 결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불한다.</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b>제51조(결산감사 및 공개) ①</b> <u>조례 제33조에 의한 간사는 정기회의 시 전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u>간사는 다음해 1월 셋째주까지 당해 연도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익월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

#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2020.06.23. 제정

2020.10.13. 개정

2021.03.31. 개정

2022.09.28. 개정

2023.02.23. 개정

2023.05.18. 개정

2024.02.13. 개정

2024.08.12. 개정

2024.11.11. 개정

**2025.12.15.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의 규정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라 한다.) 제23조에 의거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 명칭은 “구월4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구월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월4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구월4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회의 사업 계획을 말한다.
5. “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중 주민 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의 각종 문화행사, 생활체육, 주민교육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 자치 업무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동 주민참여예산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및 규칙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정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5조(소재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조례 제4조 및 조례 26조의 규정에 따라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6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지역 청소년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은 주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7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8조(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 12. 9.)

1. 구월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구월4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신설 2025. 12. 9.)
3. 구월4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일부개정 및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9.)
4. 구월4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일부개정 및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9.)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5. 12. 9.)

1. (삭제 2025. 12. 9.)
2. (삭제 2025. 12. 9.)
3. (삭제 2025. 12. 9.)
4. (삭제 2025. 12. 9.)

**제10조(위원 모집)**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한다.

② 위원 모집은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2020.10.13. 개정)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및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④ 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전광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광판의 규모에 맞게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12. 9.)

제11조(위원 신청 및 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12. 9.)

1. (삭제 2025. 12. 9.)
2. (삭제 2025. 12. 9.)
3. (삭제 2025. 12. 9.)

제12조(위원의 선정·위촉) ①위원의 선정·위촉은 조례 제7조의 2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 12. 9.)

- ② (삭제 2025. 12. 9.)

- ③ 조례 제7조의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5. 12. 9.)

제13조(추천운영위원회) ① (삭제 2025. 12. 9.)

- ② (삭제 2025. 12. 9.)
- ③ (삭제 2025. 12. 9.)

제14조(위원의 관리) 동장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역 내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회장이 한다.
3.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두며,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간사는 분과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임원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까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간사 1명
5. 분과위원장 3명 이상

**6. (삭제 2025. 12. 9.)**

- ② 회장 또는 부회장 결원 시에는 차기 정기회의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촉을 포함하여 네 번 연속 위촉된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삭제 2025. 12. 9.)**

**제18조(위원 해촉요구)** ① 조례 제20조 제1항 제6호의 직무태만은 다음과 같다.

1. 월례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자
  2.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한 자
  3.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② 제1항 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선출)** ①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② 간사는 자치회장이 위원 중 임명하며,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호선하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선출 및 해임 방법 등은 조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각 분과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 감사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감사 자료인 행정 모든 문서 및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21조(자원봉사자)** 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는 간사 업무를 보조하며 재무의 역할을 지원한다.
- ③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소집)**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위원에게 위원장 명의로 문서 및 SMS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회의 성립과 의결)** ①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임시회의
3. 임원회의
4. 분과회의
5. 기타 필요한 회의

- ② 제1항의 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 1항의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정기회)** ① 정기회는 조례 제6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매월 둘째 주 월요일로 개최한다. 단, 차기 정례회가 공휴일 등 개최가 어려울 경우 회의를 거쳐 정기회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정기회에 앞서 임원진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임원진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장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제외한 분과 위원은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과 총무를 두며,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인원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통해 적정인원으로 정하며, 위원은 하나의 분과에서만 활동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의 임기는 해당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여 분과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총무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의 및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소속 위원들과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분과회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논의된 사항 중 주민자치센터 기금사용 및 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한다.

③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0조(총회 개최)**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 정된 안건은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 청구가 있을 때

③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31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11월까지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② 자치운영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수합하여 다음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에 보고한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 한다.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회비)** ① 회비는 월 80,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공인의 비치)** 규칙 제9조에 의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명의로 공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공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3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문서 접수·등록 대장
3. 각종 회계장부
4. 사업계획서
5.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5조(상벌)** ① 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② 자치회장이 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거나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 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7조(원칙)** 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1. 시설 및 프로그램 공공성 원칙
2. 수혜 형평성의 원칙
3. 무상이용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합리적인 조화

**제38조(운영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의 관리는 동장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 ② 자치센터는 공휴일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편익을 위해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 ③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특성상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일일 운영상황을 별지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시설의 사용·이용)** ① 조례 제32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동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동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주민자치회 심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③ 자치센터 시설사용에 있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단체는 다른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시설 사용 및 이용의 제한)** ① 동장은 조례 제26조, 제27조 및 규칙 제12조의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과 기능에 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켜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청소년 유해행위
  2.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와 관련한 경우
  3. 종교적·영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때
  4. 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가 정기적으로 신청을 한 때
  6.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로 사용 또는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및 이용,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이나 난동을 피우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4.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사용료 등)** ① 시설 등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시설, 사용기간, 인원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인기도, 인원 등을 감안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별표1**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12. 9.)**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2**로 정한다.

⑥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조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이용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2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신청)** ① 동장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하거나 변경 시에는 개설시기·운영시간·수강인원·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수강인원이 정원의 50%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애인·아동대상 등 무료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특성상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및 방법·인원수 등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수강자는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에 의하여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자 선정은 수강료를 결제한 자로 한한다.

**제43조(주민참여)**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단체의 자치센터 이용편익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장 및 주민자치회장은 인터넷 매체, 언론, 유인물 및 각종 기회교육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설사용과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4조(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 ①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용료는 시설사용자가 자치센터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 전에 사용료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쳐 징수하여야한다.

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 교부로 같음하며,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한다.

3.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수입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한 다음날까지 자치센터의 명목과 주민자치회의 직인으로 관리되는 운영기금관리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수강신청자의 경우 수강료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3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1과 같다.

④ 조례 제33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⑤ 조례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회계책임자는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업무 담당자로하며, 수강료의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회 간사로 하되 필요시 자원봉사자나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업무 담당자가 보조할 수 있다.

⑥ 조례 제33조 제8항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활용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45조(사용료·수강료 등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사용시간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부개정 2025. 12. 9.)**

2. **사용예정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개정 2025. 12. 9.)**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전액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②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환불신청일 또는 환불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남은 강의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카드 결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불한다. **(일부개정 2025. 12. 9.)**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환불신청일 또는 환불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남은 강의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카드 결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불한다. **(일부개정 2025. 12. 9.)**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사용자, 수강생(수강생의

보호자를 포함 한다)은 별지 14호 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수강료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지급
  2. 조례 제10조 3항에 따른 간사 실비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 구입
  4. 자치센터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유지비, 일반수용비
  5.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6.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27조 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경비
- ② 수강료의 집행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 하여야 한다.

**제47조(강사의 선정 및 계약)** ① 조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동장이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강사는 프로그램의 신설·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계약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용역기간은 당해 분기 개설된 프로그램별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채용된 강사는 강의실적 및 경력 등을 참고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계약의 해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5.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9조(강사료 등 지급)** ① 조례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소속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 강사를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봉사활동비는 그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하고자하는 경우의 강사료는 1회당 1시간을 기준으로 35,000원으로 한다. 다만, 모집정원 초과 시 초과인원수에 대하여 월 수강료의 20%를 추가지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강사가 운영하는 당해 프로그램의 당월 수강료 총 수입액이 당월 강사료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월 수강료 총수입을 당월 임금 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회계의 처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이하 “운영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기금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2. 운영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경리관, 지출원, 감사 각 1인을 선정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
3. 경리관(운영경비 책임관)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겸임한다.
4. 지출원(운영경비 실무담당자)은 주민자치회 간사가 겸임하거나 제10조 제6항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다.
5. 경상적경비(강사수당 및 공과금 등)와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선 지출 후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5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주민자치회 회장은 자치센터의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결산감사 및 공개)** ① 조례 제33조에 의한 간사는 정기회의 시 전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12. 9.)**

② 간사는 다음해 1월 셋째주까지 당해 연도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익월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12. 9.)**

③ 조례 제33조 10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4장 세칙의 개정 등

제52조(운영세칙의 준용)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규칙 및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3조(개정) 이 운영세칙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비는 2024년 4월 강의 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운영세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세칙을 각각 폐지한다.

1.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는 운영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운영세칙,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운영세칙,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구월4동 공고 제      호

##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제3조제1호 관련)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모집인원 : 00명
3. 접수장소 :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4. 자격요건 :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 가. **구월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구월4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다. **구월4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라. **구월4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5. 구비서류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
7.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3시간) 사전 이수자 중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8. 참고사항
  - 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2회 연임가능)
  - 나.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9. 문 의 처 :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

년      월      일  
**남동구 구월4동장**



|                                                        |  |                |                                                       |
|--------------------------------------------------------|--|----------------|-------------------------------------------------------|
|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제3조제2호 관련)                           |  |                |                                                       |
| 성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주민자치위원<br>활동경험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E-mail                                                 |  | 직업<br>(직위)     |                                                       |
| 주요경력 및<br>활동사항<br>(자생단체 또는<br>마을활동 위주)                 |  |                |                                                       |
|                                                        |  |                |                                                       |
|                                                        |  |                |                                                       |
|                                                        |  |                |                                                       |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br>공모에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남동구 구월4동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                                                       |
| 1. 직장·사업장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  |                |                                                       |
|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                |                                                       |

.....

|                                |  |      |     |
|--------------------------------|--|------|-----|
|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접수자  | (인) |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br>성별, 주소,<br>전화번호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심사,<br>위원 선정 관련 정보 제공 |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br>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br>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직업, email<br>주요활동 경력 | 주민자치회 위원 관리,<br>관련 정보 제공 |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br>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br>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
| 남동구청<br>인천광역시<br>행정안전부 | 통계수집,<br>사업정보제공 | 성명, 성별,<br>생년월일 |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br>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br>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 일반주민                   | 위원 위촉 공고        | 성명, 성별          | 공고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구월4동장 귀하



# 서 약 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본인은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피선거권자 등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으며, 제17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남동구 구월4동장 귀하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소속(직위) |                                                         | 연락처  |  |
| 주소     | (이메일)                                                   |      |  |
| 위촉기간   | 년 월 일 ~ 위원 선정 완료 시                                      |      |  |
| 주요역할   | ○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br>○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결정 |      |  |

상기 본인은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며,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구월4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에 따라 남동구가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위촉기간 및 위촉기간 종료 후 2년간

○ 보유관리 : 위원선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년간 보유 후 폐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 위촉이 불가합니다.

동의

미동의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      (서명)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대장

(제7조제1항 관련)

| 연번  | 접수일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연락처 | 비고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별지 5호 서식] (삭제 2025. 12. 9.)

남동구 구월4동 공고 제       호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월4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현        황

| 주민자치회의 명   | 주민자치회장<br>(성명) | 구성인원                 | 비    고 |
|------------|----------------|----------------------|--------|
| 구월4동 주민자치회 |                | 명 (남:    명, 여:    명) |        |

☐ 위원별 인적사항

| 연번 | 성    명 | 성별 | 위촉일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년        월        일

**남동구 구월4동장**

|     |      |   |
|-----|------|---|
| 간 사 | 자치회장 | 결 |
|     |      | 재 |

|                                            |                                                    |     |  |
|--------------------------------------------|----------------------------------------------------|-----|--|
| 제 회 구월4동 주민자치회(정기회의, 임시회의)<br>회 의 록        |                                                    |     |  |
| 일 시                                        | 년 월 일( ) : ~ :                                     | 장 소 |  |
| 참 석 자                                      | ○ 총 인원 :     명    ○ 참석인원 :     명    ○ 불참인원 :     명 |     |  |
| 안 건                                        | 1.<br>2.<br>3.                                     |     |  |
| <div>□ 회의내용</div> <div>발언자 성명 및 발언내용</div> |                                                    |     |  |
| <div>□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div>                   |                                                    |     |  |
| ※ 별첨 1. 참석부 2. 심의 의결서                      |                                                    |     |  |

#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  
(    :    ~    :    )

|        |     |        |
|--------|-----|--------|
| 결<br>재 | 담당자 | 담    당 |
|        |     |        |

1. 시설 및 강좌 프로그램 이용 현황

| 프로그램 | 이용(출석) 인원(명) |   |   |       |   |   | 확인자<br>서    명 | 비고 |
|------|--------------|---|---|-------|---|---|---------------|----|
|      | 일계           |   |   | 누계(월)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시설물 점검사항

| 시    설    명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점검자<br>서    명 | 비고 |
|-------------|------------------|------|---------------|----|
|             | 시설물 관리 및 청소상태    |      |               |    |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주민자치회 및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보도자료제공, 문제점 등

※ 운영일지는 일자별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변형운용가능

|                                                                                                   |              |                         |      |       |
|---------------------------------------------------------------------------------------------------|--------------|-------------------------|------|-------|
|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              |                         |      |       |
| 일련번호:                                                                                             |              |                         |      |       |
| 신청인                                                                                               | 성명<br>(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 |      |       |
| 사용목적                                                                                              |              |                         |      |       |
| 시설<br>사용                                                                                          | 기본시설         |                         |      |       |
|                                                                                                   | 부속시설         |                         |      |       |
| 사용료                                                                                               |              | 금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
| 사용료 감면여부                                                                                          |              | ※ 사유 기재                 |      |       |
| <p>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또는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p> <p>남동구 구월4동장 귀하</p> |              |                         |      |       |
| -----절 취 선-----                                                                                   |              |                         |      |       |
| 시설사용 승인 및 접수증                                                                                     |              |                         |      |       |
| 일련번호:                                                                                             |              |                         |      |       |
| 사용자 성명(또는 단체명)                                                                                    |              |                         |      |       |
| 사 용 기 간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 |      |       |
| 시설<br>사용                                                                                          | 기본시설         |                         |      |       |
|                                                                                                   | 부속시설         |                         |      |       |
| 사 용 료                                                                                             |              |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
| <p>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년 월 일</p> <p>남동구 구월4동장(직인)</p>                             |              |                         |      |       |



## 서 약 서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은 (본 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 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승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 및 승인 | <a href="#">서류접수일로부터 5년</a><br><a href="#">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a>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구월4동장 귀중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 모집, 관리      | <u>서류접수일로부터 5년</u><br><u>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u>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격 | 수강료 감면 대상 자격 심사 | <u>서류접수일로부터 5년</u><br><u>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u>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 | <input type="text"/> | 미동의 | <input type="text"/>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 귀중

-----절                      취                      선-----

|                                   |                                                                                                                      |        |           |           |   |           |
|-----------------------------------|----------------------------------------------------------------------------------------------------------------------|--------|-----------|-----------|---|-----------|
| 문서번호                              |                                                                                                                      | 호      |           | 수 입 결 의 서 |   |           |
| 시행일자                              |                                                                                                                      | . . .  |           |           |   |           |
|                                   |                                                                                                                      |        |           |           |   |           |
| 결<br><br>재                        | 자치회장                                                                                                                 |        | 발         |           | 의 | 년 월 일 (인) |
|                                   | 회 계                                                                                                                  |        | 징 수 부 등 재 |           |   | 년 월 일 (인) |
| 협<br><br>조                        | 동 장                                                                                                                  |        | 수입년도      | 20 년도 수입  |   |           |
|                                   | 담 당                                                                                                                  |        |           |           |   |           |
| <div>결정액<div>금 원(금 원)</div></div> |                                                                                                                      |        |           |           |   |           |
| 납입인원                              |                                                                                                                      | ○○○외 명 |           |           |   |           |
| 적<br><br>요                        | <div>① ○○교실 운영 수입 원</div> <div>② ○○교실 운영 수입 원</div> <div>③ ○○교실 운영 수입 원</div> <div>.</div> <div>.</div> <div>.</div> |        |           |           |   |           |



|                                                                                                                                                                                                                       |     |  |      |       |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감면 신청서                                                                                                                                                                                                |     |  |      |       |
|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사용(수강) 기 간                                                                                                                                                                                                            |     |  |      |       |
| 사용목적 (수강과목)                                                                                                                                                                                                           |     |  |      |       |
| 감면사유                                                                                                                                                                                                                  |     |  |      |       |
| <p>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프로그램)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첨부서류 : 감면대상 증빙서류</p> <p>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동장) 귀하</p> |     |  |      |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                                                                                                                                                    |                   |                     |                                                         |       |
|---------------------------------------------------------------------------------------------------------------------------------------------------------------------------|-------------------|---------------------|---------------------------------------------------------|-------|
| 신 청 인                                                                                                                                                                     | 성 명<br>(단체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취소내용                                                                                                                                                                      | ※해당 강좌명 또는 시설명    |                     |                                                         |       |
| 취소사유                                                                                                                                                                      |                   |                     |                                                         |       |
| 환불신청액                                                                                                                                                                     | 금 원(금 원)          | 수강료(사용료)<br>결 재 방 법 | 현금 <input type="checkbox"/> 카드 <input type="checkbox"/> |       |
| 입금계좌번호                                                                                                                                                                    | 계좌환불시 기재 ( )은행    | 예금주                 |                                                         |       |
| <p>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p> <p>※환불기준 : 사용(수강)이전 전액 / 수강일 이후 취소 시 환불신청일(사유발생일) 기준 남은일수 일할계산</p> <p>년 월 일</p> <p>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동장)</p> |                   |                     |                                                         |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                                                                |      |             |     |
|--------------------------------------------------------------------------------------------------------|----------------------------------------------------------------|------|-------------|-----|
| 신 청 인                                                                                                  |                                                                |      | 생년월일        |     |
| 환불결정액                                                                                                  | 원                                                              |      | 결정액<br>산출내역 |     |
| 환불방법                                                                                                   |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br>카드취소 <input type="checkbox"/> | 입금계좌 | 계좌환불시 기재    | 예금주 |
| <p>위와 같이 수강료(사용료) 환불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p> <p>년 월 일</p> <p>영수인 : (서명 또는 인)</p> <p>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동장)</p> |                                                                |      |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사용료, 수강료 환불 |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br>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 | <input type="text"/> | 미동의 | <input type="text"/>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장(동장) 귀중

-----절 취 선-----





##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사진, 최종학력, 자격사항, 이력사항, email | 강사 선발 심사 | <a href="#">서류접수일로부터 5년</a><br><a href="#">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a>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강사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
| <a href="#">구월4동 주민자치센터</a> | 통계수집, 강사관리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최종학력, 자격사항, 이력사항 | <a href="#">서류접수일로부터 5년</a><br><a href="#">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a> |
| <a href="#">일반주민</a>        | 강사정보제공     | 성명, 성별                             | <a href="#">서류접수일로부터 5년</a><br><a href="#">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a>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구월4동장 귀중

# 강의 용역 계약서

구월4동 주민자치회와 강사\_\_\_\_\_은 다음과 같이 강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1. 용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강의내용 :
4. 강의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0시0분 ~ 0시0분)
5. 근무일 : 매주   일 (   요일,   요일)
6. 임     금
  - 1) 1시간당 : 35,000원
  - 2)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3) 가산임금률 : 없음
  - 4) 임금지급일 : 매월/이듬달 5일 이내 (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 5) 지급방법 : 예금계좌에 입금
  - 6) 원천징수 : 사업소득세(3.3%) 또는 기타소득세(22%)
7. 기타 (계약조건)
  - 1) 계약의 해지
    - 구월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
    - 무단결근 2회 이상
    - 중요이력사항을 허위 또는 누락 기재하였을 경우
  - 2) 임금지급 조건
    - 당월 수강료 총수입이 당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계약에도 불구하고 당월 수강료 총수입을 당월 임금 총액
    - 회당 수입금 이외에 기타급여(제수당 등)를 구월4동 주민자치회에게 청구할 수 없음
  - 3)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함

이  
의  
특

- 사 용 자 : 구월4동 주민자치회 (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7 )  
○ 대 표 자 : (인/서명)  
○ 용역제공자 : (인/서명) ○ 생년월일(남,여) :  
○ 주 소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 1. 강의 개요

|       |  |
|-------|--|
| 강 좌 명 |  |
| 강의대상  |  |
| 강의기간  |  |
| 운영시간  |  |
| 강의목적  |  |

### 2. 강의 일정

| 회차 | 강 의 주 제 | 강 의 내 용 | 비고(준비물)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운   영   장   소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 강사 |
|---------------|---------------|------------|---------|
| .   ~   .   . |               | 외   개   교실 | 명       |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가. 총 괄

| 구   분 | 이 월 액(1) | 수 입 액(2) | 지 출 액(3) | 집행잔액(1+2-3) | 비   고 |
|-------|----------|----------|----------|-------------|-------|
| 금   액 |          |          |          |             |       |

나. 수강료 수입내용

| 연번 | 수입내용 | 수입금액 | 산출근거     | 비   고 |
|----|------|------|----------|-------|
| 1  |      |      | 수강인원×수강료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다. 수강료 지출내용

| 연번 | 지출내용 | 지출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위와 같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 구월4동장 (직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1.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 시 설 명                            | 용 도                         | 기 준 | 사 용 료        |             | 비 고                            |
|----------------------------------|-----------------------------|-----|--------------|-------------|--------------------------------|
|                                  |                             |     | 냉·난방<br>미사용시 | 냉·난방<br>사용시 |                                |
| 다목적홀,<br>회의실, 대강당 등<br>(부대시설 포함) | 강연, 토론,<br>발표회 등<br>전용 사용 시 | 1시간 | 15,000원      | 2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시<br>30분당 50% 추가<br>산정 |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 구 분          | 기준  | 수강료        |            |            | 비 고        |
|--------------|-----|------------|------------|------------|------------|
|              |     | 주 1시간 이내   | 주 2시간 이내   | 주 2시간 초과   |            |
| 문화, 취미, 교양 등 | 1개월 | 14,000원 이하 | 21,000원 이하 | 28,000원 이하 | 재료비<br>별 도 |
| 생활체육         | 1개월 | 21,000원 이하 | 28,000원 이하 | 35,000원 이하 |            |
| 체력단련(헬스)     | 1개월 | 24,000원 이하 |            |            |            |

## 감면기준과 비율

### 1.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 감면비율   | 감면대상                                                                                              |
|--------|---------------------------------------------------------------------------------------------------|
| 전액 감면  |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br>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br>3.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50% 감면 | 1.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br>2.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 감면비율  | 감면대상                                                                                                                                                                     |
|-------|--------------------------------------------------------------------------------------------------------------------------------------------------------------------------|
| 전액감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br>2.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50%감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외 수급자<br>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br>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br>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을 함께 수강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감면 가능 |

※ 감면프로그램 가능 개수는 1인 1강좌로 한다.